Ⅰ.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政策調査研究計劃에 依據한 特殊課題 研究報告書임.
Ⅱ. 收錄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北傀五大綱領分析 및 逆利用方案

研究執筆者 金 昌 順

(略歷) 北韓研究所長

刊行責任 李 壽 一 (政策企劃室補佐官)

國土統一院 政策企劃室

目　　次

1. 五大綱領에 대한 일반적 평가 …… 1

2. 남북당국간 대화기피 전술로서의 底意 …… 8

3. 高麗聯邦共和国을 提議한 북괴의 底意 …… 15

4. 大民族 会議의 이데올로기的 背景 …… 25

5. 大民族 会議의 戰術的 意味 …… 31

6. 유엔同時加入을 반대하는 理由 …… 38

五大강령의 전략전술적 意味

1. 五大綱領에 대한 일반적 평가

북괴는 1773년 6월23일 ①군사적대치 상태의 해소 ②多方面에 걸친 合作交流 ③大民族会議의 結成 ④고려연방제의 実施 ⑤고려연방国号에 의한 유엔 単一加入을 提議하면서 굳이 이提案을 五大綱領이라 称하였다.

공산당의 입장, 수단, 의도를 별로 重視하지 않거나 잘 모르는 경우는 북괴가 이 提案을 五大綱領으로 称한데 대하여 대스럽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공산당의 用語法은 그自体로서 그들의 科学이기 때문에 굳이 五大綱領으로 称하게된 까닭을 모르고서는 이提案의 眞意를 만족스럽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공산당의 행동은 그 어느 것을 막론하고 法則에 따르지않는 것이 없다. 통상 공산주의운동으로 불리는 저들의 혁명투쟁은 그 모든 것이 一定의 行動法則에 따라 진행된다. 즉 理論의 提示하는바에 의하여 綱領이 수립되고 강령을 실현하기 위하여 전략전술이 책정된다.

공산당의 강령에는 단기목표의 것과 장기목표의 것 또는 중간에 位置하는 중기목표의 것들이 있다. 그 어느것을 막론하고 공산당의 운동목표를 간략명확하게 定式化한 点에 있어서는 공통적이다.

북괴의 五大綱領은 「조선혁명」이라는 이름의 한반도 赤化를 위

한 저들의 소위 혁명투쟁에 있어서 一定한 역사적 단계를 過渡하기 까지의 그 構造를 定式化한 것이며, 此限에 있어서 同提案은 단지 一時的 臨機的인 것으로 끝나는 것에 아니고 앞으로 그 목표를 달성할때 까지 一定의 단계를 두고 堅持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点에 있어서 북괴의 五大綱領은 저들의 조선혁명을 위한 대내외정책과 대남투쟁의 一般体系的 相互性을 堅持하면서 그것들의 一貫性鬪爭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

그러므로 북괴의 五大綱領은 상대방과의 어떤 타협 양보 調節을 考慮하고서의 提案이라기 보다는 차라리 그런것에 대하여는 堕落視하는 혁명주의적 입장에서의 一方的 宣言인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点은 북괴의 입장을 파악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보아야 할 것이다.

북괴의 입장은 철저히 레닌의 전투적 유물론으로 확고하다. 북한 공산주의의 성격, 정책, 의도가 현실적 타당성可能의 합리주의를 차라리 賤視하고 原則主義에 의한 혁명투쟁을 本位로 하는 까닭은 다름아닌 그들의 입장이 레닌의 전투적 유물론에 확고히 입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레닌의 변증법적 유물론은 세계가 불이다 물이다 하는 식으로 철학논의를 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人間社会의 党派性을 강조하여 결국 푸로레타리아뜨가 부르죠아지를 타도하는 무기로 사용되는 한에 있어서만 意義가 있다고 했다. 그

러한 의미의 변증법적 유물론을 레닌은 전투적 유물론이라고 命名했다.)

북괴가 朴政權과의 타협에 의한 改良主義的 價値를 인정하고자 하지 않는 것은 첫째는 자기네의 体制維持를 위하여 강경노선이 必要한 때문이고, 둘째는 敵의 体制를 有利하게 만드는 저들의 不利를 피하기 위함이다. 二重의 不利를 피하는 것은 곧 二重의 利를 얻는 것이 된다. 이에 있어 그들에게 必要한 것은 전투적 유물론의 기본입장을 堅持하는 일이다.

북괴의 정책은 그들의 입장을 반영한 변증법적 수단에 불과하다. 북괴의 정책은 七.二七휴전협정과 같은 어떤 중대한 전환의 계기가 없는한 일관하여 대내외적으로 비타협주의이다. 이点은 그들이 改良的 発展을 不願하고 혁명적 발전만을 추구한다는 証左일 것이다.

七.四南北共同声明은 근본적으로 그들로서는 타협의 産物이 아니다. 그들의 운동목표로서의 赤化闘爭을 포기한다거나 停止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時勢에 맞게 저들의 「조선혁명」을 진행한다는 정도의 정책문제이다. 즉 저들의 조선혁명을 위한 대내외정책과 대남투쟁의 一聯体系的 相互性을 그대로 堅持하면서 긴장완화의 国際潮流에 대응한다는 변증법적 수단문제에 지나지 않는다.

「조선혁명」은 必勝한다는 저들의 근본적 입장에 변화가 없는한 저들의 정책문제는 본질적인 변화가 있을 수 없다. 전투적 유물론을 固守하는 저들의 입장과 改良主義的 발전을 부정하는 저들의 정책문제는 一体関係에 있기 때문이다.

七．四南北共同声明후의 남북당국간대화를 평가 하기를 북괴가 이 声明의 실천과정을 통하여 진지한 面을 보여준 반면에 南쪽이 保守的이었다는 판단을 하는 것은 아직도 저들의 의도를 덜 파악하는데서 起因하는 것이겠다.

七. 四 南北共同声明에 담아진 저들의 의도 곧 전략전술은 북괴의 행동을 지배하는 法則이며 지도하는 科学이다. 그렇기 때문에 七. 四南北共同声明에 담아진 저들의 의도를 모르고서는 어느쪽이 진보적이고 보수적이다는 평가를 옳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북괴의 의도는 일반적으로 말하여 객관적 과정의 展開에 照応하는 북괴의 의식적 계획적 요소이다. 즉 「객관세계가 이와같이 전개되어 우리는 이렇게 해야겠다」는 의식적 계획적 指向이다.

七. 四南北共同声明에 담아진 북괴의 의도 곧 전략은 그것이 완전한 것이냐 아니면 결함이 있는 것이냐에 따라서 저들의 「조선혁명」을 빠르게 할 수도 있고 느리게할 수도 있다. 또는 가장 짧은 거리를 잡아서 추진할 수도 있고 더 곤란한 길로 빠져 들어가게 할 수도 있다.

이와같이 결코 단순한 것으로 보아넘길 수 없는 저들의 의도를 놓고볼때 七. 四南北共同声明의 실천과정에서 저들의 행동이 진보적이었고 이쪽이 보수적이었다는 표현으로 마치 前者가 긍정적이었고 後者가 否定的인양 평가하는 것은 科学的이 못된다.

이상 七. 四南北共同声明과 북괴의 의도와의 관계를 약간 언급한 것은 五大綱領에 담아진 북괴의 의도 곧 전략문제가 어떤 것인가

를 想定시키기 위해서이다.

五大綱領에 담아진 북괴의 의도를 붙잡지 못하면 우리의 평가는 헤사가 되고말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괴가 五大綱領에 의하여 저들의 赤化闘爭을 前進시켰느냐 후퇴시켰느냐의 여부내지 더 容易한 길로, 혹은 더 곤난하고 고통이 많은 길로 가게 했는가의 여부까지 알아보지 않고서는, 五大綱領에 대한 만족스런 평가에 이르지 못할 것으로 안다.

북괴는 五大綱領을 一定한 단계에 있어서의 운동목표로 내걸었다. 여기서 운동목표라 한 것은, 「조선혁명」에 있어서의 대남투쟁의 목표를 말함이다. 이 목표가 얼마동안의 時間을 經過한 뒤에 달성될 것인가는 저들도 모른다. 다만 一定의 目標가 수립된 이상은 그것을 향하여 가능한 전진을 다할 따름이다.

이点에 関하여 대표적인 例를 들면, 북괴는 五大綱領에서 高麗聯邦共和国을 提請했는데, 이것은 表面的 提議야 어떻든, 저들로서는 앞으로 一定한 단계를 두고 闘爭을 통하여 그提議를 꺼어이 달성하고야 말겠다는 운동목표로 提示한 것이다. 이것이 眞正한 그들의 意図이다.

어떤 사람들은 북괴 金日成이 1960年 8.15연설을 통하여 南北聯邦制를 提請한바 있는 사실을 想起하면서 1973年 6月23日에 그가 다시금 南北聯邦制를 提請한 사실에 대하여 하등의 의의도 부여하고자 하지 않지만 적어도 저들의 의도를 科学的으로 평가하는限 그럴수는 없을 것이다.

1960年에 북괴 金日成이가 8.15 연설을 통하여 南北聯邦制를 提請한 것은, 그때로서는 북괴가 国際社会에 있어서나, 또는 南北한의 民族社会에 있어서나 다같이, 글자 그대로 일개地方的인 不法集団에 不過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한반도에는 南과北에 一対一의 대등한 政権이 存在한다는 効果적인 이메지 메이킹을 할 수 있을까, 해서 그같은 提案을 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10여年후인 1973年 6月23日에 고려연방공화국을 提案한 것은 1960年 8.15연설을 통하여 제안한 남북연방제안의 목적이 일단 달성되었다고 보고 그 기초위에서 이번에는 고려연방공화국을 제안하게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1960年 8.15 연설에 의한 남북연방제 제안은, 한반도의 남과 북에 一대一의 대등한 정권이 존재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即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나 남북한의 민족사회에서나 다같이 한반도의 唯一合法政権으로 認定을 받은데 대하여, 북괴는 일개 不法的인 共産集団으로 인정을 받고 있었던 상황에서, 一대一의 대등관계를 쟁취하기 위하여 표방되었던 것이라면, 1973年 6月23日의 고려연방공화국 제안은, 이제는 한반도의 남과 북에 一대一의 대등한 정권이 존재한다는 상황에서 앞으로 언젠가는 고려연방공화국을 쟁취하겠다는 목표로서 提示한 것이다.

그리하여 実質的으로는 한국정부의 平和統一外交宣言의 효력을 막기 위한 전술적 대응인 동시에, 赤化통일의 중간목표로서의 聯邦制 단계를 기어이 확보하겠다는 운동목표의 設定인 것이다. 북괴가

굳이 五大綱領이라 称하는 까닭은 여기서도 自明해졌다. 即 앞으로 하고자하는 운동목표를 간략명확하게 定式化한 것으로서 自明해지는 바이다.

2. 남북당국간 대화기피 전술로서의 底意

북괴는 남북당국간 대화를 근본적으로 타협 및 協調에 의한 남북관계의 改良的 発展을 위하여 선택한 것이 아니다.

敵과의 타협 및 協調에 의한 改良的 発展은 근본적으로 改良主義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혁명적 立場으로 부터는 離脫을 뜻하게 된다.

전통적으로 改良主義에 대한 공산당(마르크스·레닌주의党)의 기본적 해석은 혁명에 有害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까닭은 改良主義는 改良 그自体가 目的의 全部이지만 공산당은 혁명주의에 의한 혁명 그自体가 目的의 全部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위의 規定을 남북당국간 대화에 그대로 적용하는 북괴는, 朴政権을 상대로 하는 남북대화가 곧 敵과의 타협 및 協調에 의한 개량적 발전을 위한 改良主義에 따르는 것이라면, 이것은 저들의 「조선혁명」에 근본적으로 有害하다는 結論에 도달하고 있다.

북괴는 남북당국간 대화가 저들의 혁명적 개량주의에 의하여 진행되기를 원했다. 공산당의 혁명적 개량주의는 一群의 客観的 조건과 情勢가 自己네에게 크게 不利할때 迂廻하여 革命目的을 追求하는데 目的을 두고 있다.

따라서 本来의 改良主義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본래의 改良主義는 개량 그 自体가 目的의 全部이기 때문에 革命을 否定하며 革命的 発展조차도 拒否하게 되지만 공산당의 혁명적 개량주의는

혁명주의를 堅持한채 다만 勢不利에 対応 迂廻하여 当初의 革命目的을 그대로 추구하는 것이다.

북괴가 朴政権을 상대로 하는 남북대화를 저들의 조선혁명에 有害하다고 断定한 理由는 부르죠아的 改良主義가 공산당의 혁명적 개량주의를 圧倒하여 결국 남북관계의 개량주의적 개선을 強要하고 있다는데 있다.

남북관계가 부르죠아的 改良主義에 의하여 改善되면 북괴의 「조선혁명」은 無視되고 현실적으로 追放되고 마는 것이다.

이문제는 부르죠아権力의 改良主義에 의한 改善은 부르죠아権力을 強化하고, 공산주의革命을 瓦解하는 기초를 두는 것이다. 북괴는 부르죠아 권력으로부터 강요된 改良主義에 의한 남북관계의 개선은 저들의 「조선혁명」을 瓦解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응할수가 없으며, 그것으로 부터 빨리 빠져 나와야 하는 입장에 서게 되었다.

이문제는 남한당국과의 대화에 깊이 끌려 들어갈수록 북괴는 궁지에 몰릴 위험마저 없지 않기 때문이다.

本是 七·四南北共同声明의 調節에 의한 남북당국간 대화는, 그들에게 긴장완화의 거센 객관적 潮流에 당장은 순응하는 것이 혁명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하다는 迂廻政策에 따르는 것이었다.

요컨데 이것은 공산당의 혁명주의를 迂廻하여 추구한다는 소위 혁명적 개량주의였다. 이런 경우의 정책문제를 공산당에서는 「革命의 副産物」이라고 한다. 七·四南北共同声明의 調節에 의한 남북 대화는 그들로서는 바로 이 革命의 副産物 理論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朴政権을 상대로한 남북당국간 대화는 저들의 혁명적 개

량주의 곧 革命의 副産物 理論을 받아주지 않았다. 오히려 부르조아權力의 개량주의가 저들의 혁명적 개량주의를 圧倒하게 된다고 보았다.

이렇게 되자 북괴의 自体葛藤은 커졌다고 본다. 그것은 부르조아權力으로 부터 강요된 改良主義에 의한 남북관계의 개선에 따라가야 하느냐의 거부세력과, 이와는 반대로 朴政權과의 대화는 一定한 조건하에서 공산당의 혁명적 개량주의 곧 革命의 副産物일 뿐임으로 이것을 肯定視해야 한다는 진보세력간의 대립으로 시작하여 마침내 前者를 대표하는 軍部基盤의 극렬분자들이 승리하므로서 남북대화는 걷어치우게 된 것이라 본다.

남북당국간 대화가 최소한 공산당의 개량주의에 의한 혁명의 부산물일 수 있기 위해서는 그것은 부르조아權力을 붕괴하기 위한 道具로 되어야 할뿐 아니라 혁명운동의 일층의 발전을 위한 支柱로 되어야 하는 것이다.

※ (여기서 혁명운동이라 함은 북괴의 대남투쟁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全韓 共産化를 위한 저들의 対内外政策과 対南闘争의 一聯体系的 「조선혁명」을 말함이다.)

남북당국간 대화가 朴政權을 붕괴하는 道具로 되어지지도 않고 저들의 「조선혁명」의 일층의 발전을 위한 支柱로도 되어지지 않는다면 저들로서는 남북당국간 대화를 지속해야할 필요성이 없게 된다. 하물며 남북당국간 대화가 부르조아權力을 강화하는 道具로, 또는 북괴의 「조선혁명」을 와해하는 도구로 되어진다고 보면은 그들로서는 속히 이것으로 부터 벗어나야 할 것이다.

북괴가 남북당국간 대화로 부터 벗어나고자한 意表는 1972年 11月4日 南北調節委 第二次 共同委員長会議를 끝낸 다음부터 점차로 露出되어 1973年4月16日 김일성演說을 통하여 細心했던 사

람이면 누구도 알아볼 수 있게 公然化 하였다. 즉 南北調節委 機能의 政治的 格下와 저들의 상투적 남북정치협상을 公言하므로서 남북당국간 대화로 부터 벗어나고자 한 것이다.

그후 同月 23일 24일에는 南北調節委의 幹事会가 열려 南北調節委의 運営細則과 제3차 本会議日程을 討議한바 있고, 이어서 同年 6월 12일 13일에는 서울에서 南北調節委 제3차 会議가 열린바 있지만 이것들은 이미 북괴가 남북당국간 회담의 파탄과 그에 대한 책임전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演出된 저들의 煙幕戦術에 지나지 않았다.

북괴는 南北調節委 제3차会議의 前夜에 평양방송을 통하여 「남조선 괴뢰」「6.25침략전쟁도발」등의 冷戦用語를 다시금 登場시키는가 하면 休戦線에서의 「대남방송」도 再開하였다. 이것은 1973년 6월9일부터 11일 사이에 있었던 일이다.

북괴가 위와 같이 南北調節委 제3차 会議의 前夜를 기하여 七.四南北共同宣言 以前의 対南闘争으로 되돌아간 것은 비록 短幕劇이기는 하지만 저들로서는 부르조아權力을 붕괴시키기 위한 道具로서의 迂廻政策(남북대화) 곧 공산당의 혁명적 개량주의의 有用性에 限界를 느끼고, 이럴바엔 闘争形態의 再転換에 의한 一貫性闘争으로 되돌아 가겠다는 示威였다.

남북당국간 대화에 임했던 북괴의 戦術任務가 中途에, 그것도 数個月을 넘지 못하고 単期에 挫折되므로서 저들의 남북당국간 회담의 태도는 再定立을 必要로 하게 되었다.

그것은 남북당국간회담의 持続에 따라 남북한관계의 展開는 눈에

보일듯이 自己네에게는 부르죠아權力으로 부터 強要된 의미의 평화가 되고 부르죠아權力에게는 공산당으로 하여금 온갖 非合法活動을 버리게 하여 漸進的으로 改良主義的 남북관계 改善에 순응케 한다는 利点을 안겨주게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것은 남북당국간대화에 임했던 当初의 저들의 意図와는 상치된 状況의 展開이다.

七.四南北共同声明을 調節하고 남북당국간대화에 임하던 북괴의 당초의 意図는 기본적으로 ①공산당의 권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한다. ②공산당의 권력에 필요한 時間的 利得을 提供한다. ③공산혁명을 붕괴시키는 것이 아니고 非共産勢力을 붕괴시키는 사명을 수행한다는 諸点을 確認하고 있었을 것이나, 七.四南北共同声明에 調印한 壱年을 넘기지 못하고 북괴의 이 意図는 挫折을 느끼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새로운 転換点을 찾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1972년 11월4일의 南北調節委 제2차 共同委員長会議를 끝낸때로 부터 約 半年에 걸쳐 북괴는 국제여론을 意識한 南韓과의 対応에 留意하면서 한편 그들로서는 이미 無意味하고 不利益하다고 판단된 남북당국간회담으로 부터 벗어날 口実의 設定에 精力을 집중하게된 것이라 본다.

南北調節委 제3차会議가 끝난지 꼭 10일후인 1973년 6월23일 북괴는 소위 祖国의 平和的統一에 관한 五大綱領을 발표했다.

이提案은 現実的 意味에 있어 南北共同声明 以来의 남북당국간회담을 진지하게 계속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파탄으로 몰아넣기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북괴의 五大綱領은 平和定着과 共存의 단계를 거쳐 統合과 統一에 도달하고자 하는 韓国의 平和的 統一과는 근본적으로 그意図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괴는 五大綱領을 발표한 그時刻부터 次元을 새롭게 하는 선전의 砲門을 열고 五大綱領만이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가능케하는 唯一한 길이라고 우겨대면서 그밖의 것은 결정적으로 排他하고 말았다.

북괴는 부르죠아權力의 改良主義的 圧倒로 부터 저들의 『조선혁명』을 옹호하고 발전시키게 위하여 남북당국간회담을 有用한 道具로 利用하려던 七.四南北共同声明 以来의 迂廻政策을 후퇴시키고 五大綱領에 의한 혁명적 進出을 꾀하게 되었다.

五大綱領의 전략전술적 기초는 앞으로의 운동목표를 定式化한데 限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죠아權力의 改良主義的 攻勢로 부터 圧倒当하고 있는 남북당국간 대화로 부터 벗어나려는 意図도 内包시키고 있는 것이다.

북괴는 五大綱領의 발표로 새로운 起点을 構築하게 되었다. 그것은 첫째로 남한당국에 대하여 対話를 願하거든 五大綱領에 응하라는 攻勢防禦를 취하게된 것을 말함이며 두째로, 남북당국간 대화의 실패에 대한 책임전가를 미리 마련해 놓으므로서 安心하고 공격으로 転換할 수 있게 되었음을 말함이다. 여기서 『공격으로 転換』이라한 것은 남북당국간대화를 파괴하고 그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뜻한다.

북괴가 五大綱領을 발표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者를 통일을 원하지 않는 分裂主義로 몰아대는 것은 실은 남북당국간대화를 파괴하고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転換의 口実인 것이다.

북괴가 五大綱領의 正当性을 極口 弁護하여 남북당국간대화가 성공하지 못하는 것도, 평화적 통일이 성취되지 못하는 것도, 모든 원인은 오로지 남한당국이 자기네의 五大綱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내외여론을 의식한 책임전가의 口実인 것이다.

3. 高麗聯邦共和國을 提議한 북괴의 底意

1973년 6월23일 북괴 国家主席 金日成은 체코슬로바키아共産党 中央委員会 総秘書 구스타브·후사코一行을 환영하는 平壤市 群衆大会에서 「남북한이 各各 유엔에 들어가서는 않된다고」 말하고, 「통일이 이루어지기前에 유엔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적어도 聯邦制라도 実現한 다음 高麗聯邦共和国의 口号를 가지고 하나의 国家로서 들어가야할 것이다」는 要旨의 演説을 했다.

이 演説에 의하면 南北聯邦制라도 実現하기 前에는 南北韓의 同時 유엔加入을 반대한다는 것이 主된 뜻이고 聯邦制国号를 高麗聯邦共和国으로 提唱한 것은 다만 南北聯邦制案의 呼訴力을 強化하자는 目的에 지나지 않으며, 한편 同日 아침에 발표된 韓国政府의 平和統一 外交宣言에 대한 反応이었다고도 할 것이다.

한반도情勢를 체계적으로는 理解하지 못하는 第三国人, 또는 통일문제에 있어서의 북괴의 眞意를 깊게는 알지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북괴는 남북聯邦제안의 선전에 힘주어온 것이 사실이다. 고려연방공화국 제안도 선전적 次元에서는 마찬가지이다.

本是 북괴의 南北聯邦制案은 政治学의 通念에서 말하는 聯邦 또는 国家聯合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聯邦 또는 国家聯合을 成就하기 위해서는 最少限 単一国家의 경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国家形成의 理念的 基礎에 관한 同意가 前提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괴의 南北聯邦制案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하등

의 言及도 없다.

북괴의 南北聯邦制案이 그理念的 基礎를 밝히지 못하는 까닭은 그들로서는 聯邦 그目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남북통일 공산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過渡的 対応으로만 그 意義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南北이 다같이 同意할 수 있는 聯邦国家形成의 理念的 基礎를 밝힐수가 없다.

북괴의 南北聯邦制案은 그構想에 있어서 첫째로 北韓이 소련 中共등 両大共産国家와 接壤하여 그들과 同盟関係에 있는데 反하여 南韓은 大洋건너 盟邦을 갖고 있는 地理的 不利때문에, 항상 北方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重視하고, 두째로 北韓은 南韓보다 地下資源이 풍부하여 工業発達이 有望한데 反하여 南韓은 地下資源이 적고 平野가 많기 때문에 経済的 相互補完関係에 의하여 서로 恵沢을 줄수 있다는 点을 重視하고, 세째로 위와같은 事情때문에 共産主義의 民族綱領의 命題를 南韓社会에 계속 適用하면 共産化는 반듯이 勝利할 수 있다는 이데올로기 楽天主義에 기초하고 있다.

이点에 있어서 북괴의 南北聯邦制는 聯邦国家의 成立条件을 雙方의 理念的 同意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북쪽의 理念에 의한 一方的 통합을 前提로 하고 있음이 분명해진다.

1960년 8.15연설(김일성)에 의하여 提請된 南北聯邦制와도 起点을 달리하는 1973년 6월23일의 五大綱領에 表示된 고려연방공화국(1. 項 五大綱領에 대한 일반적 평가 末尾参照)은 이데올로

기的 含蓄性에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을 마치 韓半島의 한구석에 存在하는 보잘것 없는 부르죠아民族主義国家로 看做하고, 얼마동안은 이것과의 併存関係를 維持하면서 그過程에서 대한민국의 存在를 파괴하는 공산주의운동의 물결을 계속 남한사회에 몰아 넣으므로서, 마침내 하나의 共産権力에 의한 全韓的 統合을 달성할수 있게 하자는 思考方式을 기둥으로 삼고 있다.

북괴의 고려연방공화국에 의한 궁극적인 남한병합의 전략사상은 근본적으로는 스타린의 方式에 따르고 있다.

스타린은 中央러시아가 辺境地方의 부르죠아民族主義的 政府를 打倒하고 소베트聯邦으로 一元化할 来歷에 대한 要旨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辺境地方은 中央러시아의 軍事的 経済的 援助없이는 独立의 存在를 守護할수가 없고※ 또 中央러시아는 辺境地方의 燃料原料 및 食糧의 원조없이는 그軍事的 経済的 힘을 維持할수가 없다. 이와 같은 兩者의 事情에다 共産主義의 民族綱領의 一定한 命題를 加味한 것이 러시아共産主義者의 民族政策의 性格을 規定한 것이다.」(푸라우라 第251号에 게재한 스타린의 論文에서)

(当時 辺境地方에 수립된 부르죠아 民族主義的 政府는 러시아에서 들어미는 社会主義運動의 물결을 막으려고 소베트権力에 대하여 宣戦을 했다. 그들은 民族부르죠아지 手中에 権力을 保守하기 위하여 辺境地方에 個別的인 부르죠아国家를 建設하려고 했다. 読者諸君은 이反革命的 計劃이 失敗로 돌아간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1918년 12月15日에 발표한 스타린論文"빛은 東方으로 부터"에서)

북괴는 스타린의 民族政策에 模範을 求하여 통일정책을 체계화하고 있다. 북괴는 中央러시아가 辺境地方의 부르죠아 民族政權을 打倒하고 소베트聯邦으로 통합한 例를 韓半島 情勢에 「창조적으로 適用한다」는 전략사상으로 굳어져 있다.

북괴의 통일정책이 聯邦制단계를 통하여 남북간에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단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들로서는 스타린의 민족정책에 나타나 있는바와 같이 北의 人共国으로 부터 南의 부르죠아 民族政權에 대하여 공산주의운동의 물결을 밀여 넣어 將次 남한의 공산주의 分子등에게 全權力을 集中시키는 基礎위에서 南北관계를 새롭게 展開시킨다는 方式과 一体関係에 있는 것이다.

이問題는 북괴가 남북연방제 형식을 통하여 남한주민에게 정치적 문제와 생활상의 문제를 가지고 干涉하려 들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는 眞心을 감추지 못하는 것이다.

북괴는 필경 南北聯邦制의 이름 아래서 成員一方에 대하여 忠告하고 勸告하는 「倫理」를 발취하려할 것이다, 그래야만 북한의 공산기지를 原動力으로 하는 全韓共産化革命이 추진될수 있기 때문이다.

북괴가 고려연방공화국을 통하여 어떤 方法으로 또는 어떤 형식으로 赤化統一에 봉사하고 공헌하려할 것인가는 그모두를 측정할수는 없는 일이겠으나 그中에서 한가지 명백하게 내다볼 수 있는

것은 연방성원의 이름으로 韓国에 대하여 내정간섭을 하려들것만은 틀림없을것 같다. 그것은 경미한 것으로부터 엄중한 것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하고자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네의 행사하는 영향력에 의하여 남한사회의 혁명이 승리하게 된다는 전략사상의 실천으로 될 것이다 이것은 곧 레닌의 隣接革命論을 따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괴의 고려연방제를 정치학이나 국제법상의 연방국가 또는 국가연합에서 그類型을 찾고자 한다면 시발서부터 잘못된 노력이다.

북괴의 고려연방제는 支分国家의 結合에 의한 複合国家를 형성하자는 것도 아니고 조약에 의한 국가의 단순한 결합을 실현하려는 것도 아니다. 그러한 것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것이 북괴안의 특이한 점이다.

북괴의 남북연방제는 形態論的으로는 1956년의 울부릿트案을 따르고 있다. 울부릿트는 統独에 이르는 過渡期 形態로서 독일안에 相異한 사회체제를 가진 두개의 국가를 성립시킨후 국가연합의 형태로서 중간해결을 찾아내고자 했다. 그후 결국 통독문제는 一民族 二国家形態(동독공산당으로서는 二民族 二国家主義를 堅持)로 일단 成形되어 各各 유엔에 同時加入하고 있다.

북괴의 고려연방공화국안은 한반도에 存在하는 상이한 사회체제를 가진 두개의 국가를 연합하여 연방의 형태로서 中間解決을 찾자는 点에 있어서는 비록 울부릿트統独案과 다름이 없다고 하겠으나 고려연방공화국의 単一国号를 가지고 유엔에 加入하면 몰라도, 남북한이

각자 단독으로 가입하는 것은 영구적 민족분열의 위험성이 있다고 하여 독일방식을 거부하고 있다.

북괴는 남북연방제를 거론할때 마다 提案說明을 통하여 민족주의적 분장을 짙게 하고 있다. 독일방식을 거부함에 있어서도 단일민족의 운명을 크게 우려하는 동족주의를 내세웠다. 물론 저들 提案의 설득력과 호소력을 강화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라 하겠지만, 실은 이것 때문에 그들 提案의 순수성은 누구에게도 받아들여질 수 없다.

왜냐면 북괴는 민족주의집단이 아니고 反民族的 공산주의 집단이다. 공산주의자들에게는 민족보다도 계급이다. 계급을 위해서라면 몰라도 단일민족의 운명을 위하여 독일방식에 반대한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간다.

공산주의자들은 민족을 자본주의 시대의 역사적 범주로 보고 자본주의 체제의 해체와 더불어 민족도 그 공고한 共同体를 변질하게될 것으로 믿고 있다. 북괴가 暫定的 남북한의 연방제를 提議함에 있어서 한반도에서의 자본주의 체제의 解体를 원하고서의 民族共同体의 변질에 그 사상적 근원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끝으로 고려연방공화국안의 현실적 의미, 곧 전술적 측면을 찾아보자.

북괴는 평화적 통일을 위한 한국정부의 現実化政策이 국제사회에서 환영을 받게 되고, 대체로 한국정부의 뜻하는 방향으로 한국문

제가 점진적 해결의 길로 처리될 가능성이 짙어지게 되자 북괴는 이것을 방해할 목적으로 고려연방공화국의 단일국호에 의한 유엔가입을 주장하게 되었다.

북괴는 1978년 6월 당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분위기가 긴장완화로 기울어졌고, 列強間의 利益不一致 要因이 협상에 의하여 해결되는 시대에 들어갔고, 세계적 분쟁의 씨로 되어있는 분단국가 문제가 현상유지의 방향에서 해결되려는 징후가 농후해지자, 황급히 세계의 고아를 면하기 위한 외교활동에 국가적 정력을 총집중하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한국은 북괴의 국제적 진출이 한국문제의 현실적 개선과 해결을 고의로 방해하지 않는限 저들도 잘 풀리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대국적 견지에서 북한주민 역시 우리와 동족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들이 잘살게 되는 것을 축복하려는 善意의 민족적 度量까지도 인색하지 않을 생각을 가져왔다. 이点은 남북대화를 통한 한국의 끈기있는 인내와 성의를 가지고서의 평화통일을 위한 부동의 집념을 통하여도 이실히 입증된 바이다.

그러나 북괴는 실지로 두개의 한국을 획책하는 방향에서 아니, 한국을 따라잡고 제쳐버리려는 경쟁의식을 가지고 그간 집요한 외교활동을 벌여왔다. 그리하여 유엔총회에서는 한국고립화투쟁의 선전무대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게 되었다.

종래의 남북연방제에 고려연방공화국의 국호를 보충한 것은 유엔총회에서의 북괴의 宣伝戰을 뒤받침하기 위한 것이었다. 북괴는

저들의 인상을 국제사회에 투영하기 위해서도 외군철수, 언커크解体, 유엔司解体, 연방제실시등의 결의안채택으로 몰고갈 舌戰을 준비하게 되었다. 한국의 위치를 약화하기 위한 冷戰調의 소위 혁명주의 外交를 펼쳐나갈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고려연방공화국을 提唱할 당시 북괴는 현상유지의 국제조류에 편승하여 남북연방제에 의한 남북분단의 현상고정을 야심하게 되었다. 이点을 一民族国家 二政権의 한국정부의 평화통일외교선언을 逆으로 이용하면서 단지 서울과 평양의 단순한 형태의 一대一의 대등한 관계의 구축이 아니라 남북연방제에 의한 혁명주의적 남북분단의 현상고정으로 몰고 가고자 했음을 말함이다.

이 문제는 赤化統一戰略의 定式에서는 긴장완화의 정세에 적응하는 투쟁형태로 되어진다. 그리하여 비록 당장은 북괴의 주장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주장을 계속 되푸리 하면서 혁명적 투쟁을 전개하면 언젠가는 결실될 날이 올것이라는 그들 특유의 낙천주의가 원천적으로 되어있다.

북괴는 저들이 유엔총회의 무대에 오르게된 것을, 이를 위한 그동안의 혁명투쟁의 성과인 것으로 간주한다. 또 이제와서 서울과 평양에 一대一의 대등한 두개의 정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국제사회로 하여금 확인시키고, 한편 그 사실을 한반도의 5천만 인구의 의식구조속에 내면화시키게된 것도 역시 이를 위한 그동안의 혁명투쟁의 성과물로 보는 것이다. 요컨데 万事 그와같은 방식의 과정을 거쳐서 한반도에서 자본주의 체제의 해체를 실현하겠다는 것

이 저들의 定式된 혁명전략이다.

북괴는 고려연방공화국의 국호를 깊은 생각없이 내던진 것은 아니다. 남북연방제에 의한 赤化統一의 行程을 현실적 日程에 올려놓기 위하여 一定한 단계의 혁명운동 목표로서 내세운 것이다. 이제 부터는 고려연방공화국의 국호에 의한 남북연방제를 거듭 촉구하자는 것이다. 언젠가는 실현될 것으로 믿고 지금은 読経하듯이 되푸리만 하더라도 그自体로서 赤化革命을 진행하는 것이 된다고 저들은 인식하고 있다.

이리하여 고려연방공화국의 국호는 북괴의 대외선전에 크게 이용될 것이겠고, 대내정치용으로 그효용은 무시할 것이 못될 것이다. 또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평화통일에의 한국의 의지를 制圧하고 이데올로기 本位의 赤化統一路線을 평화적 방략에 의하여 내밀려고할 것이다.

요컨데 북괴는 이것으로서 赤化統一의 기본혁명전략을 버릴수 없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로 들어났고 그것은 또 남북대화와는 관계없이 公開戦術에 의하여 추진되리라는것 自明해졌다.

북괴주석 김일성은 고려연방공화국의 국호를 提唱하는 연설에서 自体의 혁명역량을 튼튼히 할 것과 다른 혁명역량과의 단결강화를 촉구하고 이것이 혁명승리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그러한 방방법으로 「우리혁명의 승리」라는 표현의 적화통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맑스·레닌主義의 기치, 푸로레타리아国際主義의 기치, 반제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공산국가 인민과 단결하

며, 국제노동계급과 단결하며 싸우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과 단결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북괴의 赤化統一전략을 또한번 공개적으로 확인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북괴의 적화통일전략계획을 소련 중공을 포함한 공산진영을 직접적 예비군으로 편성하고 있고 또 국제노동운동과 3A권의 반제투쟁도 직접적 예비군으로 편성하고 있다. 공산진영과의 동맹외교 3A권 국가들과의 유대강화 및 인민외교의 강화등은 이래서 있는 것이다.

이제 그러한 한반도 적화혁명의 전략계획을 고려연방공화국의 국호에 의한 남북연방을 주장하는 자리에서 재확인 했다는 것을 저들의 真心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폭로하고 있는 것이다.

4. 大民族会議의 이데올로기的 背景

북괴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五大綱領을 발표함에 있어 大民族会議를 중요항목의 하나로 提議했다. 대민족회의가 종래의 정치협상에 다하여 굳이 다른 점이 무엇인가를 찾아 내자면 우선 그構成要素를 克明히 밝힌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북괴는 대민족회의의 구성관계를 밝히기를 『북반부의 노동자, 근로농민, 근로인테리, 청년학생, 병사들과 남조선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군인, 민족자본가, 소자산계급과 같은 북과 남의 각계각층인사들과 각정당 사회단체등』이라고 한 것은 이데올로기的 함축성에 있어서는 공산당의 「인민회의」를 적나하게 뜻하고 있다.

공산당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하나의 사회를 인민과 비인민의 복합된 생활체로 보고 이속에서의 사람들의 관계를 인민의 범주에 속하는 세력과 비인민의 범주에 속하는 세력의 계급관계로 인식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공산당은 스스로를 인민의 前衛로 자부하여 비인민을 타도하는 것을 生来의 사명으로 하고 있다.

북괴의 「조선혁명」은 우선 한반도에서 인민이 비인민을 독재하는 사회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그리하여 북괴의 통일정책은 북한에 구축된 공산기지를 거점 내지 원동력으로 하여 남한사회를 그들이 생각하는 「인민이 비인민을 독재하는 사회」로 逆倒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로 그것을 이데올로기的으로 體系化한 것이 북괴의 反帝 反封建 人民民主革命論이다. 대민족회의의 사상적 이

론적 배경은 곧 이 반제 반봉건 인민민주 혁명론이다.

북괴의 반제 반봉건투쟁은 한국의 국가적 성격을 식민지적 半封建的 국가로 규정하고서의 개념설정이며 인민민주혁명은 주로 「제국주의와 결탁한」 현실적 지배세력의 타도를 목적한 전략사상과 이론에 따른 것이다.

북괴가 대민족회의를 제의함에 있어 저들의 반제, 반봉건투쟁과 인민민주혁명의 대상만을 그 구성요소에서 빼고 있는 것은 이유있는 일이다.

만일 북괴가 대민족회의의 구성요소를 提議함에 있어 한국의 지식인, 민족자본가, 小資産계급까지도 포함시킨 사실에 대하여, 그것은 進取的 민족주의가 아니겠느냐고 질문을 제기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1차대전후의 공산주의의 민족강령이 해답을 안겨줄 것이다.

1930년대와 40년대에 중국대륙에 실천된 공산주의의 민족강령은 소위 신민주주의 혁명의 첫단계에 있어서는 민족자본가와 小資産階級과는 혁명적 연합을 꾀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毛沢東의 「중국혁명과 중국공산당 (1939년)」, 「신민주주의 론 (1940년)」, 「연합정부론」 (1945년), 「현정세와 우리의 임무」 (1947년), 「인민민주專制論」 (1949년) 등에 잘 나타나 있다.

신민주주의혁명 곧 人民民主主義革命의 첫단계에서의 소멸대상은 봉건적지주, 관료부르죠아지, 매판자본이었고 이에 속하지 않는 民族부르죠아지는 인민의 사회적 범주에 속한다고 하여 그들과의 혁명적 연합을 提請했던 것이다.

이리하여 항일전쟁기의 중공의 신민주주의 혁명과 정치는 진보적 지주와 민족자본가 까지도 공산당의 통일전선에 포함시켰다. 요는 혁명의 성격이 反帝 反封建 人民民主革命인 까닭으로 제국주의와 결탁한 봉건세력, 매판자본, 관료자본만이 혁명대상으로 되어질뿐 그렇지 않은 『양심적』지주와 민족부르죠아지는 당연히 공산당의 통일전선으로 끌어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괴의 대민족회의의 구상은 그들이 무엇으로 반제 반봉건 인민민주혁명의 일차적 소멸대상으로 삼고있는가를 감추지 않고 있다. 그것은 民族부르죠아지, 小資産階級, 지식인까지도 대민족회의의 구성요소로 명시하고 있는 사실을 통하여 명백해졌다.

그렇다면 대민족회의의 구성요소에서 제거된 세력은 한국사회의 누구인가. 북괴는 그것을 한국사회의 소위 매판자본, 地主, 관료자본이라고 無言으로 답하고 있다.

북괴가 무엇을 가지고 한국사회의 매판자본, 관료자본, 지주세력이라고 하는지 그自体부터가 문제이지만, 어쨌든 그들이 기피하는 세력은 현실적 정치세력과 그것의 경제적 배경인 대자본이다.

한국의 현실적 정치세력과 대자본을 제외한 기타의 세력을 북괴는 『남조선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군인, 민족자본가, 小資産階級』이라 했고 이들로서 대민족회의의 한국측 구성요소로 하자고 했다.

이것은 마치 2차 대전후 국민당과의 내란시대에 중공이 내세운 혁명목표를 방불케 한다. 이때 중공은 중국혁명의 대상은 지주계급과 대자본 뿐이며 소자산계급의 상층과 中位의 부르죠아지는 아니라

고 했다. 그들과는 동맹하여 인민해방전쟁을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북괴는 중국공산당의 혁명이론과 경험의 일부를 한반도 적화혁명에 도입하고 있는것 같다. 특히 항일전쟁기를 거쳐 국민당과의 내란상태에 있었던 신민주주의 혁명의 제2기 전술을 많이 참작하고 있는것 같다.

항일전쟁기에 있었던 중공의 신민주주의혁명의 제1기는「해방지구의 확보가 主眼이었는데, 이점은 비록 시대적 배경과 상황은 달랐다 하더라도 북괴의 「민주기지」건설의 초기에 많은 영향을 준것 같다.

북괴는 제2차대전의 전후질서에 의한 남북분단을 이용하여 북한지역의 공산기지구축에 血眼이 되었는데 이때 북괴는 공산당의 강력한 통제하에 비록 상징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는 했지만 暫定的으로 「민족자본가」도 포함한 통일전선정치를 시도했는데 이것은 중공의 신민주주의혁명의 제1기에 있었던 三三制의 경험을 인색하게 도입한 것이었다.

중공은 신민주주의혁명의 제1기에 해방지구에서 三三制를 채용하고 參議会(의회격)와 행정부에서 공산당원은 三分之一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그밖의 三分之一은 공산당원이 아닌 진보분자에게, 그리고 나머지 三分之一은 중간입장의 분자들에게 안배하고 있었다.

북괴는 지금 대민족회의를 통하여 중공의 三三制의 경험을 창조

적으로 살리고자 한다. 북괴는 대민족회의에 남한의 「진보세력」과 「중간입장의 분자」들을 들어오게하고 자기네는 통제력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반제 반봉건 민주혁명단계의 공산당의 원칙적 행동강령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북괴가 대민족회의를 提議함에 있어 『남조선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군인, 민족자본가, 소자산계급』을 남측의 구성요소로 제의한 것은 남한의 지식인을 공산당이 아닌 진보세력으로, 민족자본가 및 소자산계급을 중간세력으로 고려하고서의 제안이었다.

대민족회의의 북한측 구성요소로서 제의한 『노동자, 근로농민, 근로인테리, 청년학생, 병사』는 실질적으로는 각계각층일수 없다. 북한사회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利害의 不一致 要因이 한국사회와는 다르다. 그곳에는 공산당의 통제하에 사회조직의 계열화만이 있다. 뿐이지 그들간에 이해요인의 不一致로 인한 상이한 정치적 입장과 주장은 있을수 없다. 다만 공산당의 주장을 각자의 위치에서 지지하는 것 뿐이니까 백사람이 나와도 한사람 모양으로 행동하기 마련이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단일 팀이며 단일 세력이다.

이에 대하여 한국측 구성요소로서는 자기네가 기피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아예 제명처분을 해놓고 공산당의 同調勢力과 최소한 공산당을 반대하지 않는 세력을 求하는 방향으로 범주를 규정하고 있다.

물론 남한사회의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이 북괴의 독선적 사고방식대로 공산당의 同調勢力일수도 없고 또 남한사회의 민족자본가

및 소자산계급이 남북관계에 있어서 중간세력일수도 없으며 또 남한사회의 지식인이 용공적 진보세력일 수도 없는 것이지만 북괴는 이문제를 극좌형식주의적으로 해석하여 맹랑한 낙천적 모험주의에 빠지고 있는 것이다.

남한정세에 대한 북괴의 인식이 너무도 주관적이고, 또 낡은 사고방식의 公式을 堅持하여 혁명주의를 고집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질서 유지와 평화통일의 달성을 위하여 무시할수 없는 가장 주된 방해요인의 하나이다.

대민족회의의 소집을 제의함으로써 북괴는 기본적으로 냉전형의 통일정책을 공개했고 그리하여 진정으로 통일에 접근하겠다는 노력보다는 赤化統一의 평화적 방략으로 현정세에 대응하겠다는 태도를 스스로 밝혀 놓았다.

平和指向的 世界潮流가 지속하는 동안은 북괴의 통일정책(赤化工作)은 평화적 방략으로 일관되리라는 것을 五大綱領을 통하여 自明하게 했다.

북괴는 저들의 의도하는 통일이 어쩌면 世代論的으로 요원한 장래에 이르러서야 실현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굳혀고 있는 모양이다. 이점은 저들의 영구적 体制維持, 후계체제문제와도 관계가 있을 것이다. 왜냐면 북괴의 五大綱領은 저들의 主張이 영구현며로으로 不変하기 때문이다.

5. 大民族會議의 戰術的 意味

북괴는 全朝鮮政治委員会(1948. 4. 30), 最高人民会議(1948. 7. 5), 南北政党 및 社会団体代表者協議会(1950. 6. 7) 最高民族委員(1968, 8, 14, 1960, 11, 20 1962, 10, 23), 南北朝鮮聯邦制(1971 4, 12, 1972, 9, 17) 등 여러차례에 걸쳐 남북간의 最高性 정치조직과 정치협상을 提議한바 있는데 1973년 6월23일에 提議한 대민족회의가 이데올로기的 含蓄性에 있어서 종래의 그러한 것들과 본질적으로 성질을 같이하면서도 전술적으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면 그것은 저들의 反帝 反封建 人民民主革命의 대상을 대민족회의의 구성요소에서 간접적으로 除名하고 있는 점이라 하겠다.

하기는 1950년 6월7일 북괴의 조국통일 민주주의전선중앙위원회확대회의가 당시 한국의 집권세력을 남북정당사회단체대표자협의회 협의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했는데, 이때의 그것은 6.25남침을 前提하고서의 모든 공산주의 자에게 내려진 예비지령이었다. 즉 직접적 남침이 개시되면 누가 한국의 집권세력을 殺害해도 무방하다는 공산당의 全党的 내지 全国的 指令이었다.

당시 한국의 권력층이었던 『李承晩, 李範奭, 金性洙, 申性模, 趙炳玉, 蔡秉德, 白性郁, 尹致暎, 申興雨등 민족반역자는 협의대상에서 제거할것』이라고 한 것은 곧 남침이 개시되면 이들 人士들을 殺害하라는 공산당의 全党的 내지 全国的 指令이었다. 공산당의 全党的 내지 全国的 指令은 모든 당원에게 의무로 되어진다.

대민족회의를 提議함에 있어 한국의 집권세력을 간접적으로 제거한 것은 基本思考에 있어서는 前者(1950년 6월 7일의 全党的 指令)와 다를 것이 없지만 다만 지금은 그 시대적 환경이 직접적인 무력남침을 개시할 때가 아니고 평화적 攻略을 벌려야 하는 단계이므로 간접적 제거의 표현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북괴는 남한정세를 인식함에 있어 故意, 非故意 간에 남한당국이 反共을 強制하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는것 처럼 알고 있는 모양이지만 이것은 사실을 逆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사실은 어느 쪽이냐하면 남한사회의 국민적 반공기반이 자연발생적으로 너무 공고하기 때문에 敵性의 공산주의와는 관계개선을 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따라서 시간을 요하게 되었다는 것이 남한당국의 고충일 수 있다.

따라서 북괴가 남한당국에 대하여 『말로서는 社会를 완전히 개방하자고 하면서도 실지에 있어서는 남북사이의 온갖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남북사이의 交流와 合作을 극력 반대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것은 저들의 韓国觀이 非現実的이며 極左形式主義的임을 면치 못한다.

북괴는 대민족회의를 제의하는 저들의 내용부터가 한국사회의 국민감정을 크게 害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故意 非故意간에 아랑곳하지 않는다. 도대체 북괴의 『兵士』가 어떤 존재인지는 몰라도 남북대화를 위하여 그들의 대표까지도 동원되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이 제안의 현실적 타당성은 조금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제안을 한 것은 저들에게는 현실적 타당성이 본질인 것이 아니라 혁명이 본질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 点에 북과 남의 입장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북괴는 容共的 意味의 人民的 세력을 정치무대에 올려놓기 위한 조직형태가 대민족회의이기를 원한다. 그리하여 대민족회의 안에서 남한당국의 통일노선과 정책을 폭로하고 공격하는 전술을 통하여 남한의 국가적 와해를 촉구하자는 것이다.

북괴는 마치 저들이 汎民族的 民主的 議会方式의 통일운동에 접근하고 있다는 인상을 世論앞에 投影하기 위하여 대민족회의를 제창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것은 세계의 潮流가 平和指向的이었던 관계로 무력도발의 인상보다는 汎民族的 기반의 협상방식으로 통일운동에 접근하고 있는듯한 인상을 조성하는 것이 저들의 전술문제로서는 필요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공산당의 전술은 주어진 정세와 조건에 照応하여 그에 적응하는 투쟁형태와 조직형태를 어제의 그것에 능동적으로 代替시켜야 한다는 法則이 있기 때문이다. 但 전략적 목적을 그대로 두고 이에 능동적으로 봉사하고 복무하는 신축성만이 전술변화의 한계이다.

북괴는 赤化統一이라는 전략목적을 그대로 두고 그때 그때의 상황에 적응하는 전술개편만을 일삼고 있는 実情이기 때문에 한국이 추구하는 민족적 통일정책과는 근본적으로 융합할수 없는 갈등관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괴는 赤化統一의 전략목적에 무의미하거나 不利

益할 때는 상대방의 착실한 현실적 대책에 대해서는 돌아다 볼 생각조차 하지않고 엉뚱하게 저들의 전략목적에 봉사하는 제안만을 찾아내려고 한다. 대체적으로 선전위주의 비현실적 제안들이다. 그러는 동안에 저들의 赤化統一의 전략목적이 한치의 전진이라도 있게되면 그것만이 소중하다는 낡은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다.

이리하여 赤化革命의 合理主義者들인 북괴는 대민족회의에서 제기하고 있는 남북한의 구성요소로서 남북한관계의 공식적 정치기구를 탄생시킬수 있다면 이는 곧 자기네가 원하는 민족단일전선을 형성하게될 것이며 이 조직의 정치적 타당성은 표면으로 反美救国闘爭의 통일운동과 이면으로 인민민주혁명의 사명을 負荷하는데 있다고 볼 것이다. 그리고 그 과업의 구체적 진행은 이 조직(대민족회의)안에서 북괴의 단결된 세력이 한국측의 분산된 세력을 흡수하여 한반도에서의 부르죠아民族政府를 전복하는 方向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공산주의의 천재적 전략전술가를 自負하는 북괴 김일성 일당의 극좌모험집단은 한반도의 부르죠아民族政府를 소멸하려는 혁명전략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고 있다.

혁명대상 : 제국주의 또는 그와 결탁한 국내 반동세력(美帝国主義와 日本軍国主義 및 이와 결탁한 買辦資本, 官僚자본, 地主勢力

혁명임무 : 민족해방, 인민민주정권수립(旧形 부르죠아 民主主義도 아니고 순수한 푸로레타리아 민주주의도 아닌 신형태의 과도적 민주정부 수립)

혁명세력 : 공산당이 통제하는 노동자 농민 및 이와 연합한 小資産階級 내지 민족부르조아지의 통일전선

혁명성격 : 신형태의 특수한 부르조아民主革命 (反帝 反封建 人民民主革命으로 定式化)

북괴의 대민족회의는 위의 전략계획에 나타나 있는 혁명세력의 결성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다. 대민족회의의 구성요소가 북괴의 혁명세력과 일치하게 나타나 있는 점을 통하여 저들의 眞意가 혁명에 있음을 의심하지 않게 한다.

五大綱領을 발표하면서 북괴 당국자는 『나라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방도에는 물론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다.』고 했는데 저들의 대민족회의도 요컨대 그가 말하는 여러가지 방도가운데 들어있는 하나임에는 틀림없다.

북괴가 대민족회의를 통하여 현실적으로 추구하는 전술적 이익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을 것이다.

①南北調節委의 無力 無為化를 위하여

북괴는 몇차례의 南北調節委会合을 통하여 相対方을 測定해 보았고 동시에 남북조절위를 통해서는 자기네의 요구를 충족시킬수 없다는 것도 잘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남북조절위는 쓸모가 없게된 道具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이에있어 남북대화를 일방적으로 파괴하는 인상을 줄 필요는 없지만 無用한 道具로 판명된 이상 애착을 둘 필요는 없다는 것이 솔직한 북괴의 입장으로 되어졌다. 이리하여 남북조절위를 無用視하는 입장에서 案出된 대응

책이 바로 대민족회의의 구성과 개최에 대한 요구로 나타났다.

북괴로서는 남북당국간 대화의 도구인 남북조절위를 남북대화의 무대에서 후퇴시키고 그 대신 대민족회의를 등장시켜 여기서 자기네가 의도하는 적화통일의 평화적 방략을 침투시키겠다는 전술적 전환이다.

물론 북괴로서는 이 제안이 상대방에 의하여 접수되리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남북당국간 대화를 기피하기 위한 代案으로서, 또는 이에 있어서의 자기네의 입장을 변호하면서 혁명목표의 不動性을 스스로 옹호하자는 것이었다.

②한국사회의 정치적 교란을 위하여

한국사회에서는 七.四南北共同声明의 발표로 一時 들뜬 感이 있었던 통일에의 虛像이 그동안의 남북접촉과정을 통하여 차분히 진정되어가고 있다. 이 사실을 북괴는 『조국통일의 밝은 展望이 도로 흐려지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북괴는 남북대화가 진척되지 않는 책임전가를 위해서도 자기네가 남북관계의 타개를 위하여 꾸준한 誠意를 가지고 있는것 처럼 좋은 代案도 있다는 듯이 呼所力있는 선전물을 준비하게된 것이다. 특히 한국사회에 대하여 지배세력만을 제쳐 놓고 그밖의 모든 계층에 대하여 대북대화에 참여할수 있도록 協議体를 만들자고 선동하므로서 통일문제에 대한 한국의 국론분열과 정치적 사회적 교란을 꾀하고 있다.

③북괴의 대내정치를 위하여

七.四南北共同声明이 발표되자 북괴는 이 声明이 自己네의 原則대로 成案되었고 따라서 통일도 자기네의 뜻하는 方向에서 성취되리라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려왔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그 약속은 空手票와도 같이 허무한 것으로 되어가자 북괴는 住民의 士気를 고취하고 赤化統一에의 희망을 불어넣기 위하여 대민족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는 선전물을 상영했다.

북한주민이 공산당으로 부터 멀어져 나가지 않도록 정치적 給油作業을 하기 위하여 또는 赤化統一에의 発動이 당원들의 심장에서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대민족회의의 소집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런 방법으로 독재자의 위신을 유지하고 体制를 강화하는 것이 북괴의 전통적 정치행태이다.

④対外宣伝과 工作을 위하여

한반도문제를 表皮밖에는 모르는 제三国人들의 관심을모으기위하여 특히 유엔총회를 의식하고 효과있는 선전전을 마련하는 것은 저들에게는 가치있는 일일 것이다. 또한 교포사회의 관심을 항상 북괴측으로 붙잡아 두기 위해서도 그것은 필요할 것이다.

6. 유엔同時加入을 반대하는 理由

북괴는 1949년 2월과 1952년 1월에 유엔加入을 신청한 사실이 있다. 그후 20여년이 지나가는 동안 정세도 많이 달라진 것이 사실이지만 북괴는 지난날 자기네가 유엔加入을 신청한 사실을 뒤엎고 한국정부가 제의한 남북한 同時加入을 반대했다. 그眞心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看做된다.

①남과 북에 1대1의 대등한 두개 정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聯邦制에 의하여 굳혀놓고 연방국가의 테두리 안에서 공산주의 운동의 물결을 북으로부터 남한사회로 밀어 넣어 赤化革命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만일 남과 북이 유엔에 가입하게 되면 연방국가의 울타리 안에서 북의 영향력으로 남의 赤化를 수행하는 길이 방해를 받게될 것이기 때문에 남북의 동시가입을 반대하고 연방제에 의한 가입을 주장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우선 한반도의 정통주권인 대한민국과 1대1의 대등한 地位에 올려 놓은 다음 북한공산기지의 영향력에 의하여 남한적화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하나의 붉은 조선」에 도달하겠다는 저들의 赤化統一戰略의 定式에 따르는 것이다.

②위와 같이 연방제에 의하여 二民族 二国家단계를 거쳐서 궁극적인 적화통일에 도달하겠다는 先分裂主義를 堅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야 말로 어떠한 분열에도 반대하고 통일을 원하는듯

이 꾸며대기 위하여 능청스럽게도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유엔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적어도 연방제라도 실현한 다음 고려연방공화국의 국호를 가지고 하나의 국가로 들어가야 한다고 인정한다』는 九尾狐의 奸計를 늘어 놓게 된 것이다.

대 책

1. 대민족선언의 준비

남북한 관계는 미군철수로 인한 転換期状況의 극복, 제 4 차 5 개년경제계획의 성공에 의한 위대한 민족주의시대가 개막되지 않고서는 改善될 가망성이 내다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기대하는 위대한 민족주의시대가 개막되었을때 천재적 민족주의를 발휘하는 웅장한 대민족선언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2. 해외공관을 거점으로하는 지속적인 五大綱領 분쇄작전

우리의 해외 공관원들은 북괴의 五大綱領분쇄의 잘 훈련된 요원들이어야 할 것이다. 그 理由는 북괴의 대외정책공작이 五大綱領을 목표로 하여 대한민국 고립화투쟁을 벌릴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정부사이드에서 우리 공관원에게 북괴의 五大綱領을 물어 왔을때 명쾌한 해답을 주지 못하면 그결과는 막대한 정치적 손실을 보게될 것이다.

3. 교포사회에 대한 북괴침투의 봉쇄작전

북괴는 五大강령에 의한 교포사회의 침투공작을 적극화하게될 것이다. 북괴는 어느 시기에 이르러서는 교포사회의 대표들로서 대민족회의의 구성요소로 삼게될는지 모른다. 여기에 자기네의 조국

통일전선 산하 유령단체들과 남한사회를 대표하는 소위 통혁당 대표를 가하여 이것으로서 남북한의 각계각층 및 해외교포사회를 총망라한 대민족회의인 것으로 음모할 가능성도 전연 배제할수는 없다.

때문에 우리로서는 在日 在美교포사회는 물론 세계각지의 교포사회에 대하여 북괴의 침투가 좌절되도록 교민대책을 적극화해야 하겠다.

④五大綱領의 赤化方略的 本質解明에 의한 대북괴 정치 심리전

평화적 통일의 민족적 윤리를 되풀이하여 北上시키는 방도를 취하면서 동시에 五大綱領의 赤化方略的 본질을 체계적으로 해명하여 북괴의 남북당국간 대화 기피의 否当性을 민족적 양심 및 세계良識앞에 고발한다.